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48

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 권칠승·조계원·민병덕

소병훈 • 박용갑 • 임호선

김태선 · 서미화 · 송옥주

김준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2월 3일,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·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·출입을 통제하고,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.

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·서울경찰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데,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, 국회 직원의 진·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·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.

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·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2조의5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경위처법안」(의안번호 제774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5(국회경위처) ① 국회 중요 인물의 경호, 국회의 회의(본회의,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,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)의 경호 및 국회청사의 방호·경비를 위하여 국회경위처를 둔다.

- ② 국회경위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
-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.
-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경위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국회경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2조의5(국회경위처) ① 국회
	중요 인물의 경호, 국회의 회의
	(본회의,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
	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, 국정감
	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)의
	경호 및 국회청사의 방호・경
	비를 위하여 국회경위처를 둔
	<u>다.</u>
	② 국회경위처에 처장 1명과
	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
	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
	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.
	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
	국회경위처에 관한 사항은 따
	로 법률로 정한다.
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	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
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	
항은 다음과 같다.	
1. 국회운영위원회	1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사. 국회경위처 소관에 속하
	<u>는 사항</u>
<u>사.·아.</u> (생 략)	<u>아.ㆍ자.</u> (현행 사목 및 아목

	과 같음)
2. ~ 17. (생 략)	2. ~ 1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